

허가신청서
가축분뇨관련영업 변경허가신청서
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7일 (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)	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 기재)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	
	주소	(전화번호:)		
영업소소재지	(전화번호:)			
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		
처리시설 (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처리방법	처리공법	용량(m ³ /일)	수량
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	[]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 [] 가축분뇨처리업 [] 가축분뇨시설관리업			
변경내용				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허가 : 30,000원 변경허가 : 15,000원 변경신고 : 15,000원
------	-------	---

첨부서류	1.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.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.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허가 : 30,000원 변경허가 : 15,000원 변경신고 : 15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신청서(신고서)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
 -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
-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
 - 가.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
 - 나.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
-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
 - 가. 영업소의 명칭 변경
 - 나. 운반차량의 변경
 - 다. 기술요원(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의 변경
 - 라. 대표자의 변경
 - 마.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
 - 바.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(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-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
 - 가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 - 나.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 - 다.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